

第225回國會  
(定期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2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1年9月7日(金)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질의서)

(勞動部)

○金武星 위원

<노동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허위·조작된 통계로 어떻게 실업대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나?

○고용안정센터 취업 조작률이 평균 45%라는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98년 이후 취업한 549,847명 중 무려 247,431명이 허위 취업

장관, 노동부가 지난달 28일부터 22개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취업자 통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45%가 허위·조작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최저 35%에서 최고 79%가량 취업자가 부풀려졌다는데 맞습니까?

노동부 조사 결과 대로라면 98년도부터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한 인원이 549,847명이나 되는데 평균 45%가 허위라고 할 경우, 무려 247,431명이 사실상 취업을 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 그만큼 실업률도 허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고용안정센터의 수가 98년 사업시행 초기에 99개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126개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166개소 확대·운영하고 있는데, 취업실적을 보면 98년도에 5.7%, 99년도에는 16.3%, 2000년도에는 25%로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2000년도에는 13.75%의 취업실적을 보였다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으며, 과거 실적 역시 제대로 된 통계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98년도에는 3.1%, 99년도에는 9%의 실적만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취업실적이 이렇게 저조함은 결국 고용안정센터 직원들만 놀면서 월급 받은 셈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실도 모르고 노동부는 올해 44개 고용안정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등

해마다 늘려 왔으니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고용안정센터 운영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이며, 각 기관별로 운영 인원수 및 운영비 지원실적, 센터 설치비 등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의 운영 실적이 이렇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총 543명의 공무원과 2,100명 이상의 상담원 등이 여기에 투입되어 연간 인건비만도 수백억 원 이상이 나가는 등 국고를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장관의 책임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 장관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안정센터를 비롯 고용관리사업으로 인력은행, 일일취업센터, 고용촉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0년도 예산 집행실적만도 41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파견된 공무원 인건비는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취업실적을 보면 허위로 작성된 고용안정센터 24만3천 명을 비롯, 인력은행 6만4천 명, 일일취업센터 23만 명, 고용촉진센터 2만4천 명 등 총 56만2천 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여타 기관도 정확한 취업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허위·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이는 구체적인 실업대책 부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관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들 기관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각 고용안정센터에는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다보니, 노동부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할 뿐 아니라, 이들 파견 공무원들은 엄청난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는데, 장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실업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장관을

비롯 담당 공무원 모두가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고용관리사업 운영현황>

구 분	구인 인원	구직 인원	취업 알선	취업자 수	취업률 (%)
고용안정 센터	557,096	972,382	2,194,293	242,979	25.0
인력은행	118,748	157,748	469,748	64,337	40.8
일일 취업센터	240,508	274,931	233,586	230,346	83.8
고용촉진 센터	73,795	109,562	351,644	24,213	22.1

○崔明憲 위원

◇산업인력공단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상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불용액은 퇴직급여충당금으  
로 적립되었는바, 이는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  
는 우선적으로 부족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  
라는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른 것  
이나 인력공단의 퇴직급여적립액은 퇴직충당금 설  
정액 599억8,500만 원의 15.4%인 92억6,000만 원에  
불과하여 99년도(적립률 : 36.07%)에 비해 현저히 낮  
은 수준으로 향후 문제점으로 대두될 소지가 다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리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는 관행 때문으로 보이는데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  
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토록 한 근로기준법(제34조)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아니라 이와같이 불용액 중에서 퇴직급  
여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이라도 미리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의 견  
해는?

◇인력개발사업상 취업률 제고

산업인력공단의 인력개발사업은 직업전문학교를  
통한 기능사 양성 및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2000년도 직업훈련실적을 보면, 훈련실적면  
에서는 계획(29,920명)보다 많은 인원(48,836명)을 훈  
련시켰으나 취업률에 있어서는 99년(60.6%)보다 낮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참  
고자료>

이는 주로 해외취업훈련의 효과(취업률 : 5.2%)가  
99년(취업률 : 45.9%)보다 낮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해외취업훈련 후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은?

훈련과정	정원 (계획)	입학	복 휴학	중도탈락		훈련실시인원				취업 대상	수료후 취업	취업률 (%)
				인원	%	계	현원	수료	조기 취업			
계	29,920	48,836	21	2,659	-	46,160	45	45,993	122	27,063	10,080	37.7
기능사양성(1년)	7,570	7,832	21	741	9.4	7,074		7,074		4,206	4,072	96.8
여성특별	480	617		11	1.8	606		604	2	606	36	6.3
이동	400	795		6	0.8	789		789				
군전역예정자	400	403		26	6.5	377		377				
원격화상	800	1,265		218	17.2	1,047		1,047				
가상능력개발	8,000	24,091			-	24,091		24,091				
외국인	300	260			-	260		260				
고용촉진진단기(주부,준고령자)	6,000	7,413		1,097	14.8	7,316		6,316		6,316	4,684	74.2
해외취업훈련	1,560	803		63	7.8	740	45	695		695	36	5.2
기능사특별	3,760	4,587		437	9.5	4,150		4,030	120	4,150	1,199	31.7
창업훈련	650	770		60	7.8	710		710		710	53	7.5

## ◇장애인 고용률 제고방안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민간부문과 공공 부문에서 모두 꾸준히 증가하여 10년 전의 약 2배를 상회하는 고용률을 보이고 있음.

장애인고용률의 추이(1992~2000년)

(단위 : %)

	92	95	96	97	98	99	2000
국가·지방 자치단체	0.71	0.88	0.99	1.08	1.23	1.33	1.48
공기업		0.75	0.82	0.88	0.91	1.70	1.91
민간기업	0.41	0.43	0.45	0.46	0.54	0.91	0.95

- 특히 90년대 후반까지 미미한 증가율을 보이던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률이 5개년 계획실시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공기업은 2000년 말 현재 장애인고용률이 1.91%로 법률이 정한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는 수준에 거의 육박하였음.

- 그러나 선도적 기능을 해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5개년 계획 실시 후에도 민간기업에 비해 더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최근의 빠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를 하회하는 고용률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문제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이

## ◇장애인관련 부담금과 출연금의 조정

○91년 장애인고용의무제 시행 이후 장애인고용미달업체로부터 징수한 사업주부담금 수입으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재정은 양호한 편으로 2000년말 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2,300여 억 원임.

- 동 기금에서 부담금은 96년 678억 원, 97년 772억 원, 98년 795억 원, 99년도 737억 원, 2000년도 629억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은 99년 67억 원, 2000년 149억 원의 지급실적을 보이고 있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중 지원금 및 장려금 지원 실적

(단위 : 천 원)

구 분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운용계획	운용실적	운용계획	운용실적	운용계획	운용실적	운용계획	운용실적	운용계획	운용실적
지원금	686,880	461,768 (67%)	1,195,776	616,601 (51.6%)	1,149,120	768,037 (66.8%)	1,454,000	1,099,633 (75.61%)	19,424,042	14,949,731 (77.0%)
장려금	3,606,120	2,369,775 (66%)	6,277,824	3,298,657 (52.5%)	5,875,560	4,534,612 (77.2%)	7,184,736	5,641,326 (78.52%)		

※2000년 법개정으로 지원금 및 장려금이 장려금으로 통합됨

▷장애인고용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기업체 및 정부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업체 부담금을 줄이고 점차적으로 정부의 출연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노동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자활지원사업

1,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99년9월7일)에 따른 2000년4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를 노동부에서 종합관리키로 결정

○2000년10월부터 보건복지부(지자체)로부터 취업대상자를 의뢰받아 자활사업 착수

○보건복지부(집행 :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일한 능력이 있는 자를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취업대상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의뢰하고, 노동부는 취업대상자에게 직업훈련 등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함.

○동 사업은 2001년7월 말 현재 지자체로부터 28,378명을 의뢰받아 7,078명에 대해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나머지 21,300명은 취업 및 창업을 통한 자활 성공(3,539명), 부적격 및 조건불이행자(17,761명)임.

- 사업실시 현황은 취업알선(3,049명), 직업훈련(1,238명) 자활인턴·공공근로(498명), 취업지원계획 수립(2,259명) 등임.

자활사업 추진실적(2001년7월 말 현재)

(단위 : 명)

총계	취업 알선	자활훈련 (적용훈련)	자활 인턴	공공 근로	창업 지원	계획 수립중
7,078	3,049	1,238 (303)	266	232	34	2,259

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자활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그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사업대상자 확보 곤란의 문제가 그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특히 자활직업훈련의 경우, 30,000명을 대상으로 예산 5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01년7월 현재까지 1,530명 훈련에 약 12억 원을 지출하는데 그쳤는 바 이는 예산대비 2.09%의 지출실적에 지나지 않음.)

○이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은?

(다음 페이지에 계속)

2001년 자활사업 예산 및 집행실적(7월 말 현재)

(단위 : 백만 원, 명)

구 분	목 표		실 적				비 고
	예산 (당초)	인원 (당초)	예산	인 원			
				총인원 (누 계)	투입 중	취업 성공	
계	72,612 (97,612)	32,000 (40,000)	7,492	2,005	1,688	233	
취업알선 *	244	-	172	-	(3,049)	(2,963)	당초 300억중 250억 원은 정 부지원인턴사업으로 전용
자활인턴제	5,000 (30,000)	2,000 (10,000)	364	475	266	169	
자활직업훈련	55,800	30,000	1,167	1,530	1,238	64	
직업안전기관확충 및 운영	11,468	-	5,748	-	-	-	
자활사업 운영지원	100	-	41	-	-	-	

※취업알선은 7월 말까지 2,963명이 자활에 성공하였으며, 7월 말 현재 3,049명이 투입 중임.

### ○金樂冀 위원

직장보육시설 사업에 대해

- 직장보육시설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239개 가운데 56개 사업장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여성이 육아부담을 해소하여 취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립 지원사업은 2000년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임의설치시설까지 포함하여 203개소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시설은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등 4가지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직장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직장보육시설 이용률은 79%밖에 되지 않아 90% 가까이 되는 다른 시설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작년도 예산집행 실적도 10% 미만으로 직장보육시설 사업 목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은 직장보육시설사업이 사업목적이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보육시설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수납률 제고방안에 대하여

- 고용보험, 산재보험 수납률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노동부 자료를 보면, 작년 말 현재 고용보험 징수 결정액 2조3천52억 원, 수납액 2조4백78억 원, 수납률 89.7%로 되어 있으며,
- 산재보험은 징수결정액 2조5천46억 원, 수납액 1조9천5백54억 원, 수납률은 고용보험보다 훨씬 낮은 78.1%로 나타났습니다.
- 또 체납액을 보면, 고용보험이 2천3백53억 원, 산재보험이 5천59억이고 결손처분액은 각각 124억 원, 43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결정액은 서로 비슷한데 이렇게 체납액과 결손액이 2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체납이 발생하면 2~3개월 후에 체납처분행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회사가 공과금도 못낼 정도라면 이미 문을 닫아야 할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 2~3개월 후에 처분행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격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진신고납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납입고지제를 채택할 경우 자진신고라는 단계를 하나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할 경우 7천5백억 원에 이르는 체납액

을 5천억 원까지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사 방식도 세무서 재무제표, 지적조회, 등기열람, 현장실사 등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단이 금융계좌추적권 등이 없기 때문에 금융자산 등에 관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국세청의 경우처럼 보험체납자나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업체에 통보하고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면 수납률이 훨씬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체납처분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적용·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가 민간에 위탁하는 보험사무조합으로 알고 있는데, 수납률도 전체 수납률보다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보험사무조합 현황을 보면 총 213개로 위탁율도 9.2%밖에 안됩니다. 전산망이나 전문성, 서비스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무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朴仁相** 위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과 관련하여

□ **질의요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93년 0.78%, 95년 0.88%, 97년 1.08%, 99년 1.33%, 2000년 말 현재 1.48%로 나타났습니다.

-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공무원 채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의무고용률 2%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

- 민간부문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 의무고용률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고용률은 0.95%로 의무고용률은 2%의 절반수준입니다.

- 특히 30대 기업집단의 고용률은 0.68%로 저조한데, 이는 장애인고용보다는 부담금 납부제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본 위원은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법률상 의무선인 2%에 미달하고 있고,

- 특히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사업자부담금은 96년

678억 원, 97년 772억 원, 98년 795억 원, 99년 737억 원, 2000년 629억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 정부는 사업자 부담금을 줄이고 점차 정부의 출연금을 확대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출연금은 2000년 10억 원, 2001년에도 10억 원만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향후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 기능을 가능케 하고 민간부문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출연금을 대폭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장관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 **질의요지**

- 실업대책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2000년도 실업자재취직 훈련의 경우, 120,296명이 훈련을 받아 취업률이 37.6%에 달하는 등 실업자의 사회적·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우선 산업인력수요를 고려한 훈련과정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개설된 훈련과정들이 산업인력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주로 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분야나 이·미용, 조리사 등의 서비스 분야, 사무관리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 실제 99년 노동부에서 발표한 훈련직종별 취업률을 보면 금속 51.3%, 전기 23.9%, 서비스 10%, 사무관리 10.5%로 나타났습니다.

- 따라서 산업인력수요를 고려한 훈련과정 개설 등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 또 실업자재취직 훈련의 경우 모든 직종의 훈련비를 표준훈련비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함으로써 훈련생 모집이 용이한 이·미용 등 서비스 직종에만 훈련생들의 지원이 몰리고, 제조업·생산직 등 국가 기간산업의 훈련직종에는 훈련생 모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훈련비 지원을 훈련직종별로 차등화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실업자들이 훈련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원의 훈련상담, 직업선호도 검사 및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훈련생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2000년 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은 기금수 862개, 기금조성액은 3조4,284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기금수는 72개소 9.1%, 기금액은 5,319억 원 18.4% 늘어났고,

- 수혜대상 근로자는 1,094천 명으로 전년대비 185천 명 20.4%가 증가했으며, 평균기금액은 39억8천만 원은 3척2천만 원 8.7% 늘어났습니다.

-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된 92년과 비교할 때 기금수는 2.9배, 기금액은 7.9배, 수혜대상 근로자는 2.4배 증가한 수준으로,

- 기금수 증가폭에 비해 기금액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 평균기금액이 상승하여 사내복지기금을 도입한 기업과 미실시 기업사이에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2000년의 경우 703개 기금에서 1,019천명의 근로자에 대해 3,622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1인당 35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된 92년 이후 총 4,663천명에 대해 1조 7,316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사업별로는 장학금지급이 1,414억 원으로 전체 수혜금액의 3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인당 수혜금액으로는 주택자금 232만 원, 우리사주 구입비 242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렇게 볼 때 91년 법이 제정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시행기반이 크게 확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 문제는 아직도 시행기업수가 300인 이상 기업 중 27.6%에 불과하며, 수혜대상 근로자수도 109만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등 아직 그 수혜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기업에서의 기금 활용을 살펴보면, 근로자 복지비로 지출된 금액이 전체 기금액 대비 10.6%인 3,622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 사용액이 적고 복지사업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는 등 그 활용

이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액이 손비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면제되고 수혜근로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을 받고 있고,

- 또한 근로자의 사기양양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위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어떤 대책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요지

-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본 위원이 8월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활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그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01년7월 말 현재 지자체로부터 28,378명을 의뢰받아 7,078명에 대해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 나머지 21,300명은 취업 및 창업을 통한 자활성공(3,539명), 부적격 및 조건불이행자(17,761명)입니다.

- 특히 자활직업훈련의 경우 30,000명을 대상으로 예산 5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01년7월 현재까지 1,530명 훈련에 약 12억 원을 지출하는데 그쳤는 바, 이는 예산 대비 2.09%의 지출실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 본 위원은 자활지원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먼저 훈련대상자 규모를 적정하게 전망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활훈련 대상별 훈련방법이 적용되지 못했고,

- 자활직원 훈련으로 훈련생을 끌어들이 수 있는 유인책의 미흡과 함께 자활사업실시 운영주체 간 업무연계가 미흡한데,

- 특히 자활사업운영 주체 간 업무지원체계는 노동부의 Work-net과 보건복지부의 welfare-net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업대상자의 종합적인 정보(개인신상, 초기상담내용, 취업지원계획, 자활경로의 지정 등)와 업무절차에 대한 정보공유가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이는 수급자 당사자에게 동일 절차 반복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향후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장

관의 견해와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노동부의 work-net과 보건복지의 welfare-net간의 전산망 연계시스템을 보완하고, 프로그램의 통합작업을 통한 업무추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하여

□질의요지

- 농어민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농어민고용촉진훈련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이농이 예상되는 농·어민 등에 대하여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전업 및 재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95년부터 시행되는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과 그 가구원으로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을 보면,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상의 표준훈련비를 지원하며, 훈련수당이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28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 2000년도 훈련실적을 보면, 3,018명의 위탁인원 중 2,018명이 수료하여 1,017명이 취업하고 932명이 탈락하였습니다.

- 2000년도 사업실적에서 보면 중도탈락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취업률도 수료인원이 49.5%로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 사업은 95년 실시 이후부터 중도탈락자 및 취업률의 부진 등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본 위원은 농어민고용촉진훈련 사업 자체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농·어민 등이 직업훈련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어떤 개선대책으로 대처해왔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朴洋洙 위원

1. 근로자복지매장 보조금 회수 관련

○노동부가 제출한 200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징수 현황에 의하면 세입징수결정액 175억9천5백만 원

중 154억4천1백만 원을 수납(수납률 87.8%)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러나 정부보조로 지원된 근로자복지매장의 보조금의 경우 징수결정액 12억6천4백만 원 중 1,700만 원만을 수납하여 수납률이 1.34%로 저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실 근로자복지매장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로 보조금 회수가 문제된 것은 지난 98년 감사원의 노동부 일반감사에서 지적된 성남매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2000 회계연도에 징수결정된 복지매장 보조금 12억6천4백만 원을 세분해 보면 성남매장 4억5천4백57만 원, 인천매장 4억6천5백78만 원, 청주매장 6천5백97만 원, 제주매장 2억7천7백25만 원입니다. 이중 청주매장에서 회수한 1,700만 원이 전부입니다.

- 참고로 금년에 성남매장에서 1천만 원을 회수하였고, 제주매장에서 1억 원을 회수하여 현재 11억3천6백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 감사원에서 지적했듯이 정부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반 상황 때문에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회수계획을 마련해 법과 원칙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2% 의무고용제 관련

고용의무사업주 범위확대 및 부담기초액 조정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00년 현재 장애인 145만 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64만 명, 실업자는 18만 명이며, 실업률은 28.4%로 전체실업률보다 8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2000년12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18,710명이며, 고용률은 0.95%로 의무고용 달성시에는 20,813명의 추가고용에 그치게 되고,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생산성저하, 시설·장비개선 비용부담, 산재발생우려 등 수요측면과 적정한 기능과 학력을 갖춘 장애인력부족 등 공급측면의 요인을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서 공단에 출연한 금액은 사업주의 부담금을 초과하고 있고, 융자금을 제외한 공단출연금, 장려금, 반환금, 기금관리비 등 순수한 지출액은 824억3,800만 원으로 기금수



입총액 638억8,8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 이런 추세대로라면 적립규모도 99년 2,571억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올해에는 1,230억 원, 내년엔 770억 원, 2003년에는 고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수행에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의무사업주의 범위 확대가 연차적으로라도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한 노동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수준을 장애인 1인 고용시 추가되는 비용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 어떻습니까?

- 2000년12월31일 현재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을 보면, 고용의무인원 5,452명 중 4,065명이 고용돼, 장애인고용률이 1.48%입니다.

- 그러나 현행법하에서 공공부문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이를 강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의무고용률 2%를 밑도는 관서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이 납부하는 부담금 수준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어떻습니까?

3. 고용안전인프라의 질적 개선방안과 관련

○OECD국가의 고용안전담당 직원 1인당 근로자수가 독일 486명, 프랑스 1,454명, 일본 3,581명이나 우리나라는 8,870명 수준으로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97년 말 IMF사태로 인한 실업증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정에서

- 97년 말 83개소에 불과했던 직업안전기관이 2001년8월 말 현재 고용안전센터 167개소, 인력은행 7개소 및 일일취업센터 16개소로 확대되었고,

- 고용안전업무 담당인력도 98년 2,050명에서 2001년7월 말 현재 2,539명으로 확충되었습니다.

○97년 이후 직업안전기관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양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었으나, 질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 지난달 19일 吳世勳 위원께서 “노동부 고용안전센터가 취업을 알선해 매달 발표하는 취업자 통계수치가 상당히 부풀려졌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때 노동부는 “의도적인 조작행위는 없으며 吳 위

원 측이 자료를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관!

○어제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25개 고용안전센터의 20%인 25개소를 임의로 추출하여,

- 총 15,514건을 전화 등을 통해 취업실적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가 8,231명(53.1%)이고, 허위·부당하게 취업처리된 경우가 45.1%(6,995명), 중복처리가 19명(0.1%),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269명(1.7%)로 나타났습니다.

- 올해 7월 말 현재 전국 167개 고용안전센터가 취업을 알선해 매달 발표한 취업자 수는 195,824명입니다. 이 자료를 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고용안전센터 취업실적 조사결과에 대비해보면 진정한 취업자수는 최소 103,983명(195,824×0.531)에서 최대 107,312(195,824×(0.531+0.017))명입니다.

- 사실 노동부는 수년 동안 이렇게 부풀려진 통계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장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 통계가 조작된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더 큰 문제는 정부통계의 공신력이 땅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장관! 정부통계의 공신력 회복방안은 무엇이며, 아울러 고용안전인프라의 질적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晟祚 위원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지출한 예비비 2,120백만 원은 일반예비비인가? 아니면 목적예비비인가?

→일반예비비인 경우 질의 노동부는 일반예비비 2,120백만 원을 인건비로 충당하였는데, 예비비가 인건비 충당분인가?

<표 2> 예비비의 인건비 지출 내역 (단위 : 천 원)

기관/부서	금액
고용정책실	87,534
중앙고용정보관리소	47,710
산업안전국	40,746
산재심사위원회	12,482
최저임금심의위원회	7,748
노사정위원회	10,981
노동위원회	182,255
지방노동관서	1,466,582
기관운영	263,544

○全在姬 위원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문제

□직장내 보육시설 현황

-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현황(2001년6월 현재)

(단위 : 개소, 명)

의무설치 사업장수	설치사업장수			보육 교사수	보육 아동수	비고
	계	의무	임의			
236	124	46	78	511	4,916	보육수당지급사업장 : 11 타시설위탁사업장 : 12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용자현황

(단위 : 개소, 백만 원)

구분 \ 연도별	계	1999년	2000년	2001년7월
사업장수	6	2	2	2
용자금액	763	540	98	125

- 2001년6월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인 설치의무사업장(236개 사업장) 중 설치사업장 수는 124개에 불과하고,

- 고용보험법 제15조(별첨)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기존 건물을 이용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건물 개·보수비 및 영·유아용 비품구입비를 지원하는 것도 2개 사업장에 1억2천5백만 원에 불과(2001년7월 현재)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지극히 저조한 실정.

□문제점

- 노동부에서 인건비의 80% 가량을 지원해 줘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에 소극적

- 이용자 또한 이동거리, 보육시설의 질 문제로 직장내 보육시설 이용을 선호하지 않음.

- 또한 현재 의무설치사업장으로 되어있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대부분이 제조업이고, 이들 제조업 종사자의 대부분은 중장년층으로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할 대상자는 적음(젊은 여성들은 소위 3D업종 기피).

- 2000년 직장보육시설 지원비로 2,483백만 원 지급, 이중 6천만 원이 부정수급되었고, 전액 미회수.

□대안

▷사업주의무조항→권고사항

- 현재 직장내 보육시설은 여성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설치가 의무조항이긴 하나, 제재조항이 없어 명분뿐인 제도

- 또한 사업주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내복지기금을 이용하려해도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

- 따라서 사업주 의무조항을 권고조항으로 개정하여 사내복지기금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됨.

▷설치대상 사업장 확대

- 현재 의무설치 대상사업장이 여성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오히려 제외 사업장에는 면죄부를 주고 있음. 그러나 300인 이하 사업장에 영·유아 육아부담을 갖고 있는 여성이 더 많은 경우도 발생.

- 따라서 의무조항을 권고조항으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300인 이상을 전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있음.

▷민간보육시설과의 연계 모색

- 직장내 보육시설의 양적확대는 수요자의 요구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음. 또한 육아문제가 전적으로 여성에게 부담 지워지는 결과를 낳음.

- 따라서 직장내 보육시설의 설치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질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직장보육시설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근로자라는 측면에서 민간보육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효과적.

-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노동부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육아부담을 갖고 있는 남녀근로자 모두가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가적 보육방향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조가 요구됨.

직업상담원 문제

□직업상담원의 문제점

- 직업상담원의 69.4%가 30세 미만
- 직업상담원 중 취업지원팀 종사자 수는 전체의 46%인 899명에 불과

\* 반면에 고용안정센터는 16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직업상담원도 98년의 1,296명에서 1,919명으로 증가되고 양적인 팽창

□상담원의 문제

- 2001년5월 임동진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자료

▷직업상담인력의 부족과 심층적 상담 미흡

<주요 국가의 직업안전요원의 비교>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
기관수	1,159	842	570	619	157
직원수(명)	34,000	93,000	11,000	15,320	2,556
직원1인당 근로자수(명)	745	364	325	3,401	5,095

\* 문제점

- 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상담원 1인당 민원인 상담 시간은 평균 2~3분 정도에 불과한 실정

- 심층상담, 직업지도, 학교취업강좌, 진로상담 등의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는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활동 가능한 각종 상담 프로그램도 미흡한 상태임.

- 실업률 저조로 인한 민원 수요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상담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 상태

▷신분 불안으로 사기와 업무효율성 저하

- 현재 직업상담원은 사실상 상용직으로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용 잡급에 의한 인건비 운영과 1년 단위의 계약기간 적용으로 신분이 매우 불안정

- 또한 매년 예산 편성시 당해연도 운용인력과 보수 등이 결정되므로 행정환경 변화시 구조조정 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조직구성원 간의 위화감 등 갈등 발생으로 조직 통합력 저하

- 상담원과 공무원 간의 적용 규정의 차이(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동절기 근무시간, 휴일·휴가·병가, 초과근로시간, 과운영비 등의 여러 규정 혼재에 따른 상호 이질감 발생

- 공무원과 직업상담원의 이질적인 집단이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함에 따른 상호견제와 불신현상이

초래

- 공무원과 직업상담원의 이질적인 집단이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함에 따른 상호견제와 불신현상이 초래

▷직업상담원 간의 관리 및 지휘통솔체계의 불투명으로 인한 행정효율성 저하

- 직급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상담원 간의 위계질서가 확립이 안됨. 또한 직업상담원이 민간인 신분인 점과 수평의 구조로 인해 위계질서 확립이 곤란

▷상담원 전문 교육과정의 부재 및 전문성 축적의 한계

- 상담원들의 잦은 이직률 등으로 인해 직업안정업무의 연속성과 전문화 축적이 어렵고 신규 직원들의 업무 숙지 및 전문화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 발생

□개선 방안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 현재 노동부 직업 안정기관내의 공무원과 민간상담원 조직은 한시적인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음. 따라서 장기적으로 노동부 안정조직을 어떤 조직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

- 이에 대한 노동부의 현재 입장 및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 개선 방안

- 2001년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중 “직업상담원 제도와 관련한 일선에서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보수 문제

- 상담원들의 보수 및 가족수당의 문제

\*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비례해 상담원 보수도 인상 필요

\* 가족수당 신설 전향적 검토

· 성과상여금 문제

-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에게만 적용(금년부터 공무원의 70%에 대해 기본급의 150~50%를 연 1회 지급)

\*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제도를 실시하는 한 상담원들에게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

· 재계약 문제

- 상담원들은 1년 계약직 형태이기 때문에 1년마다 재계약

- 근로시간의 단절이 없이 형식상으로만 재계약을 하고 있어 실제로는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 재계약에서 제외되는 상담원들이 없다보니 상담원들에 대한 통솔과 기강확립 측면에서도 문제

\* 3년 계약직 등으로 계약기간을 확대하여 고용불안을 덜어주고 재계약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 해소

\* 재계약시 일부 근무태도 불량 상담원 제외 문제도 상담원 관리 및 통솔, 기강확립 측면에서 타당성

□질의 요지

▷현재 노동부에서 직업상담원과 관련하여 직업안정조직의 전체적인 틀 구축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자료, 2001년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직업상담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은?

▷현재의 직업상담원이 직업상담원 고유의 역할보다는 고용보험 업무 등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은?

▷현재의 직업상담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 의향 및 계획은?

고용촉진 훈련

□고용촉진훈련

▷개요

1. 기업복지: 신규실업자(비진학청소년), 고용보험 미적용실직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이들의 직업능력의 유지·향상을 도모

2. 사업내용

- 훈련대상: 고용보험미적용실직자, 신규실업자, 군전역자 및 전역예정자, 영세농어민 등(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2조)

- 훈련기간: 3개월~1년

- 훈련직종: 훈련 희망자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해 취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직종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 국고 보조율: 80%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생활보호대상자·비진학청소년 또는 영세농어민 등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질의 요지

▷자활대상 직업훈련과의 중복가능성은?

- 정부 일반회계 및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

로 시행하는 고용촉진 훈련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고 실업자, 군전역자 및 전역예정자,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활대상자와 중복가능성이 농후함. 차이점과 대상자 선정의 중복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보조금 지원 예산 책정시 고려대상은 무엇인가?

- 서울시의 경우 매년 보조금 회수액이 99년, 2000년, 2001년 모두 발생하고 있고, 울산시, 충청, 충남, 전북에서도 계속해서 보조금 회수액이 발생하고 있음.

-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을 위한 보조금 지급 지원사업이 전년도 사업실적이나 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나 분석이 없이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중앙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비 문제

□중앙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비

- 2000년 예산 5억 원은 중앙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책정

- 사실상 연구개발비로는 과다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예산 집행 실적

- 건립타당성에 대한 검토 연구용역은 겨우 2,990만 원 집행

- 그 밖의 연구 사업들: 총 7천만 원

1) 취업규칙제도개선 방안연구: 1천만 원(고려대학교)

2) 퇴직금제도개선 방안연구: 5천만 원(한국노동연구원)

3) 법정 근로시간 단축 설문조사: 1천만 원(한국노동연구원)

- 나머지 4억 원의 경우 서울청 임차보증금으로 전용

□문제점

-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계획의 부정확성

- 편성에 따른 예산집행 문제

□질의 요지

▷애초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서울청 임차 보증금 4억 원 전용, 애초부터 예상하지 못했는가?

- 서울청 임차 보증금으로 4억 원을 예산 전용했는데, 이것은 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청 임차보증금 문제조차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행정의 예측력 부재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별개의 사업인가? 중앙근로자 복지회관과

중앙근로자복지센터

- 20001년도에 이름만 바꾸어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 예산으로 10억 원을 책정했는데, 이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관련해서, 중앙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계획과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 사업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朴赫圭 위원

노동부 소관 결산심사 질의

2000년도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장관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 지방관서 청사신축 등 이월액 연례적으로 과다문제

2000년도 예산이월 내역을 보면 청사신축관련 이월액이 53억으로 전체이월액의 3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착공지연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월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7억 정도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이월액이 과다하게 생긴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의 검토없이 청사건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처음의 계획단계부터 건립의 타당성이나 행정수요의 파악없이 짚은 설계나 계획변경으로 인해 청사신축관련 이월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결산 때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능대학의 시설확충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의 44.5%인 268억이 이월되고 있는데 아산정보, 강경, 항공, 섬유패션기능대학의 신설과 이전 또는 확대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이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건립타당성이나 부지선정문제 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다른 이유로 인해 부지선정이나 사업이 추진된다면 계속적인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 직업훈련카드제 관련 전용과 불용의 문제

직업카드제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이 8억이며 직업훈련 카드제 연구용역 및 시스템 구입비 부족으로 전용한 액수는 6억입니다.

훈련바우처제도의 도입으로 98년부터 시범실시되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당초 배정예산은 전국 실시를 목표로 예산배정을 받았으나 시범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카드방식이 분산형에서 집중형으로 변

경되어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실시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카드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 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닌가요? 카드방식을 집중형으로 계획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8년부터 시범실시하면서 운영방식의 문제점이나 카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하고 전국실시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계획변경으로 인해 불용액이 생기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시계획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시스템 구입을 위해 예산을 적용하고 뒤늦게 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장관은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98년 99년의 직업훈련카드제 관련집행예산은 의미가 없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무엇이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없이 졸속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지난 예산이 의미가 없어지는 무책임한 결과를 낳은데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미반영으로 인한 불용액 유도 우려

다수의 산하기관이 불용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2000년도의 경우 인력공단의 경우 10억의 불용액을 기능대학의 경우 3억의 불용액을 노동교육원의 경우는 2억의 불용액을 적립하였습니다.

물론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부족한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하라는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미리 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검토보고서의 지적처럼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도 일부러 불용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우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든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금재정의 불안정성 문제

마지막으로 기금재정의 불안정성문제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경우 수입은 감소하는데 비해 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출은 증가되고 있어 적립금 규모 추이가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사업수행의 차질 뿐만 아니라 공단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는 2000년도에만 5000억에 이르며 불납 결손액도 계속적으로 400억 이상을 상회하는 등 기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기금운영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금의 안정화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노동부장관 劉容泰

(金樂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1. 고용촉진훈련 보조금 불용액 최소화 및 보조금 회수결정액 회수 방안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보조금 집행잔액 회수내역(2001년9월8일 현재)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집행잔액	2000년회수	2001년회수	회수잔액
1999	4,238	1,149	2,750	339
2000	5,114	-	295	4,819

- 99년도 회수잔액 339백만 원은 지자체 추경이 편성되면 금년 중 전액 회수할 예정이며
- 2000년도 회수잔액 4,819백만 원은 금년 중에 2,819백만 원, 2002년도에 2,000백만 원을 회수할 예정임

○고용촉진훈련은 그 대상이 고용보험 미적용실직자, 비진학청소년, 모자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조건부수급자 제외), 영세농어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훈련 중 생계곤란이나 수강능력부족 등으로 인한 중도탈락이 많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함.

○향후에는 훈련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훈련전 상담을 강화하여 적격훈련생을 선발·관리함으로써 중도탈락을 방지, 예산불용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질 의)  
2. 직장보육시설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음

(답 변)

-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저조한 원인
  - 영유아보육법령상 의무설치조항이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 보육시설을 여성전용시설로 오인, 대기업의 기혼여성 고용 기피요인으로 작용

- 보육대상아동이 있는 기혼여성의 다수는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할 자금여력이 부족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 IMF 이후,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사업주는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줄어든 반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부담은 증가

□직장보육사업의 내실화 대책

- 보육시설 설치 대상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하여(의무조항→권고조항),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설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시설설치비 용자지원사업의 이자율(현행 3~3.5%)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공직장보육시설에 설치하여 설치에서 운영까지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이며
- 유치원 부지에 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택·조합주택 등 공동주택에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

(질 의)  
3. 고용·산재보험료 수납률 제고방안과 관련하여

(답 변)

□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액 및 결손액 차이 발생 원인

- 산재보험(64)은 고용보험(95)보다 도입시기가 빨라 상대적으로 장기체납금액이 많음
- 산재보험에는 고용보험에 없는 급여징수체도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많음
  - ※ 급여징수제도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일부(10~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제도
- 이에 따라 결손처분액도 산재보험이 상대적으로 많음

<2001년 고용·산재보험 징수 현황(2001년7월 현재)>  
(단위 : 억 원, %)

구 분	징수 결정액	결손액	수납액	체납액	수납률
고용보험	20,639	119	17,932	2,588	87.4%
산재보험	19,546	396	14,507	4,643	75.7%

※ 수납률 = 수납액/(징수결정액-결손액)

- 고용·산재보험에 납입고지제를 채택할 경우, 체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 고용·산재보험의 징수체계는 자진신고·납부, 보험료 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임
  - 이와같은 보험료 징수체계는 사업장 단위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고
  - 연단위 또는 분기단위 납부가 가능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징수행정의 효율적 운영(징수관련 인력·비용절감)을 기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음
    - ※ 일본도 이와 유사한 징수체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다만,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경우 노무관리 능력부재 등으로 보험료 납부율이 다소 저조한 바, 기준임금제도를 활용하는 부과고지제 도입을 추진중이며
  - 아울러 징수방식의 변경문제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검토하겠음
- 보험체납자나 결손처분자를 신용정보업체에 통보하여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면 수납률이 개선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 신용정보업체와 관련자료를 공유하면, 노동부(근로복지공단)는 효과적인 채권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 문제는 법적근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현재 입법추진 중인 『고용·산재보험 통합징수법(가칭)』에 신용정보업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보험사무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보험사무조합은 영세사업주의 사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이러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 단체에만 허용하던 것을 세무사·공인노무사 등 개인도 허용하는 등 보험사무조합 인가기준을 완화하고
    -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보험료 징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무조합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질 의)  
1. 고용안정센터 설치·운영비 총 예산집행 현황과 각 기관별 운영요원수 및 운영비 지원실적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 고용안정센터 설치비·운영비 등 예산집행내역 (98~2001년7월 말 현재)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 현액	집 행 액			불용액 (집행 잔액)
		계	설치비	운영비	
계	104,139	93,027	63,411	29,616	11,112
2001년 7월 말	24,831	18,104	8,540	9,564	6,727
2000년	12,726	12,314	2,670	9,644	412
99년	21,719	19,552	13,800	5,752	2,167
98년	44,863	43,057	38,401	4,656	1,806

○ 각 기관별 운영요원수 및 2001년도 운영비 지원 실적

※ 불입 : 고용안정센터 직원 및 운영비 지원 현황

(질 의)  
2. 고용안정센터 취업자 부당 처리에 대해 지적 하셨습니다.

(답 변)

- 최근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지원업무 실적과 관련하여 허위·부당 처리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 전국 고용안정센터 중 25개소를 표본추출하여 조사를 하였음
- 조사결과 15,514건 중 6,995명(45.1%)이 센터를 통해 취업되지 않았는데도 센터의 취업지원 실적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 중 761건(전체의 4.9%)이 취업되지 않았는데도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 고용안정센터가 취업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취업실적을 상당부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음.
    - ※ 이는 9월6일(목) 현재 잠정 집계된 결과임.
-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업상담원을 비롯한 센터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 관련 업무개선, 사기진작 등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 이와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金晟祚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1. 퇴직금제도에 관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의견조사 보고서(퇴직금제도 실태조사 공공근로사업관련) 결과를 요구하셨음

(답 변)

○책자 별도제출

(질 의)

2. 본부 정원초과 운영실태 및 초과운영 사유

(답 변)

○2001년9월 노동부 본부는 정원 381명, 현원 400명으로 정원에 비해 현원 19명이 초과되어 있음  
 - 이는 IMF사태 이후 실업대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업대책추진단』 운영과 최근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근로시간제도개선 실무추진반』 등의 운영에 따른 초과 현원이 발생한 것임

(질 의)

3. 2000년도 지자체별 고용촉진훈련 보조금 요구액과 배정액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셨음

(답 변)

(단위 : 백만 원)

시·도별	시·도요구액	배정액	비 고
계	77,347	36,691	
서울	7,691	5,744	
부산	7,142	2,982	
대구	5,746	2,543	
인천	2,057	1,305	
광주	5,466	1,370	
대전	3,846	1,812	
울산	2,507	1,321	
경기	10,232	3,784	
강원	2,208	1,039	
충북	1,586	945	
충남	4,631	2,551	
전북	6,989	2,097	
전남	4,352	2,368	
경북	5,622	2,891	
경남	5,569	3,372	
제주	1,703	567	

(질 의)

4. 노동부가 2000년도에 지출결정한 예비비 2,120백만 원이 일반예비비인지 목적예비비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음

(답 변)

○예비비 2,120백만 원은 전액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배정되었음  
 ○인건비로 지출한 예비비는 목적예비비로서 공무원의 임금수준이 민간기업수준에 못 미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임  
 ※ 참고로 2000회계연도 예산총칙 제13조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1조 8,300억 원은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에 의한 원화부족액 보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그 사용용도를 명기하고 있음

(朴洋洙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1. 한국노총의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 체납액의 회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음

(답 변)

○노총에 지원한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 57억 원 중  
 - 폐업된 인천·성남 매장과 타용도로 전용한 청주·제주매장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액 13억 원에 대하여 반환토록 하였으나 2001년8월 현재 11억 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임  
 ※ 2000년 말 1,247백만 원 체납, 2001년 110백만 원 회수  
 ○우리 부는 국가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98년9월 노총 중앙교육원 부지를 압류하고  
 -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있으나 노총의 재정여건상 조속한 회수에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따라 매년 노총의 복지사업 수익금 등으로 체납금을 분할상환하여 체납금 규모를 줄여 나가기로 하고 있으며  
 - 복지매장 중 한국노총 소유로 되어 있는 안산매장의 건물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상승하면 자진매각을 통해 일시상환토록 할 계획임  
 ※ 안산매장 국고보조금(550백만 원)을 합하여 안산매장 건물 가격이 17억 원 이상 되어야 체납액을 완납할 수 있으나 현 시세는 12억 원임



(질 의)

2.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용의무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음

(답 변)

- 2000년12월 현재 국가·지자체는 1.48%, 민간부문은 0.95%의 장애인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 9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정 이래 장애인고용률은 꾸준히 증가추세이나 의무고용률(2%)에는 여전히 미달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무고용사업주 범위를 현행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 사업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 사업주 부담금을 장애인고용시 추가비용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이와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공무원이 1만 명에 이를 때까지 공채율을 5%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 민간부문에서도 고용장려금의 지급, 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장애인 고용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 시행 중에 있음

(질 의)

3.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강제를 위해 부담금 수준을 장애인 1인 고용시 추가되는 비용수준까지 인상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 위원님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자가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수준을 장애인고용시 추가되는 비용 수준까지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 부담금 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참고로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2000년부터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면서 평균부담금 수준을 실질적으로는 인상하였으며,
  - 2001년도에는 부담금 단가를 최저임금의 60%에서 65%로 5%p 인상한 바 있음

(질 의)

4.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강제하기 위

해 의무고용률 2%를 밑도는 정부기관에도 민간부문 부담금 수준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 개별 정부기관에 대한 출연금 부과는 예산의 부처간 이관에 불과하여 고용촉진 효과가 없으므로
  - 부처별 고용실적 공표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 의)

5. 고용안정인프라의 질적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 97년 이후 직업안정기관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양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임.
- 이에 우리 부에서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한 서비스의 수준 제고 및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구직의욕이 낮은 구직자의 실업충격완화, 구직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취프로그램의 확대·운영 및 청소년취업 후견인제 도입,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기법을 개발·보급하였으며,
  - 지속적으로 구직자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할 예정임.
- 또한 직업상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 교육과정을 업무별·경력별로 특화하여 각 단계별로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 민간기관의 다양한 교육에도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 아울러, 향후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전달체계로서 정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 실질적인 One-Stop 체계의 구축, 취업지원 관련 법령 및 업무편람의 정비 등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을 개선하여 사용자 지향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 공공직업안정기관간 업무체계 및 역할을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6. 고용안정센터 취업자 부당처리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취업실적 공신력 회복 방안에 대해 물으

셨음.

(답 변)

- 최근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지원업무 실적과 관련하여 허위·부당 처리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 전국 고용안정센터 중 25개소를 표본추출하여 조사를 한 바
  - 취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의식한 과열경쟁 등으로 고용안정센터 취업실적이 상당부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음
- 앞으로 취업실적 집계방식을 구체화하고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 담당자에 대한 교육·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고용안정센터 취업실적의 공신력을 회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음.

**(朴仁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1. 중앙근로복지관 건립비 전용예산으로 추진한 ①근로시간제 현황과 운용실태, ②취업규칙제도 개선방안 연구, ③ 퇴직제도 개선방안 등의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답 변)

- 책자 별도제출

(질 의)  
 2. 정부가 장애인고용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금을 대폭 확대되어야 함에도 확대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부담금 등 이행강제 수단이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 민간부문과 같이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처간 회계이동에 불과하여 고용을 촉진하는데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부담금 징수 대신 법상 의무보강과 더불어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시행 중
  - <법상 의무보강>
    - 재직장애인 공무원이 1만 명에 이를 때까지 공

개채용시 장애인을 5% 이상 채용토록 법적 의무 부과

- ※ 장애인공무원이 채용목표인원 1만 명에 이를 경우 장애인고용률은 2000년 기준 3.6%에 이룸

<실질적 담보조치>

-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2000년6월 『장애인공무원채용확대지침』도 마련하여 엄격 적용
    - ※ 장애인공무원 분리모집(3%→5%), 법정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 대한 장애인 최우선 배정, 인사감사시 이행실적 점검 등
  - 관련부처에 사업주부담금과 유사성격의 정부출연금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지속 요청(99~2001년 일반회계 출연금 : 135억 원)
  - 정부·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을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강력하게 고용을 촉구
    - ※ 2001년6월 차관회의 보고, 7월11일 고용현황 관보게재
  - 공문협조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하여금 직접방문 협조 요청토록 지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용촉진을 유도
- 앞으로도 국가·지자체가 의무고용률을 조기달성하여 민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요청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음

(질 의)  
 3. 실업대책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산업인력수요를 고려한 훈련과정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음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업훈련은 산업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산업수요에 부응한 실업자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실업자 훈련기관·과정이 지역의 인력 수급상황을 반영하도록 산업계·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훈련과정선정위원회』에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선정토록 하고
  - 기업과 훈련기관 간에 훈련직종·수준·방법 및 취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맞춤훈련』을 확대하고 있음.
    - ※ 맞춤훈련 실시인원 : 99년(3%)→2000년(10%)→2001년(15%)

○앞으로 직업훈련이 산업인력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질 의)  
4. 모든 직종의 훈련비를 표준훈련비로 지급하여 제조업 생산직 등 국가기간 산업의 훈련직종은 훈련생 모집이 어려우므로 훈련직종별로 훈련비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음

(답 변)  
○실업대책 직업훈련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훈련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실업대란시대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였으나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조업·생산직 직종의 훈련생 모집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임  
○앞으로는 훈련비 자비부담제를 확대하는 한편 훈련비대부제를 실시하여 훈련 실수요자 중심으로 실업자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 제조업·생산직 직종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훈련생 모집이 어려운 직종』과 장기실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훈련은 훈련비를 전액지원 하는 등 훈련비 지원방식을 다양화 해 나갈 계획임.

(질 의)  
5. 실업자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상담 없이 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개선방안을 물으셨음

(답 변)  
○우리 부에서는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 훈련 개시 전에 직업훈련에 대한 상담 및 적성검사를 받아 훈련생의 조건과 적성에 맞는 훈련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 일부 훈련생의 경우 훈련상담 없이 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모든 훈련희망자에게 훈련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 훈련상담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상담의 질을 제고하여 훈련생 스스로가 상담을 희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직업훈련전문상담원을 배치하는 한편,  
- 직업훈련 상담매뉴얼을 개발·보급(2001년5월)

하여 훈련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음

(질 의)  
6. 사내기금 수혜범위가 제한적이고 근로자 복지비로 지출된 금액이 기금조성액 대비 10.6%에 불과한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음

(답 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91년 법 제정 이후 그 시행 기반이 크게 확충되어 가고 있으며  
- 특히 2000년에는 사내기금 72개가 신설되어 총 862개 기금이 설치되었고, 기금조성액도 3조 원을 넘음  
○하지만 전체 300인 이상 기업 중 24.6%에서 실시되고 있는 등 실시업체 수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이고, 근로자 복지비로 지출된 금액도 기금조성액에 대비해 볼 때 낮음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금년 4월 기금의 자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 법령 개정내용 : ①당해연도 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30%→50%), ②기금 원금으로 근로자 대부사업 가능, ③기금해산시 잔여 재산 일부(50%) 근로자 배분 허용, ④기금 합병·분할 근거 신설  
- 또한 4~5월에 홍보 팸플릿(1,000부) 및 안내책자(3,000권)를 제작·배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임

(질 의)  
7.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자활직업훈련 실시인원이 계획 인원에 비해 저조한 이유는 훈련대상인 취업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고  
- 취업대상자가 직업훈련보다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을 우선시 하기 때문임  
※ 2001년7월 현재 취업대상자 7,078명, 취업알선 3,049명  
○앞으로 자활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 근로의욕고취와 기초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1차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훈련

실시,

- 훈련대상자를 『취업대상자』에서 『직업훈련이 가능한 모든 수급자』로 확대,
- 자활훈련수당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질 의)

8. 자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노동부 Work-Net과 복지부 Welfare-Net간 연계시스템 보완을 통한 업무추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대책을 물으셨음

(답 변)

○우리 부 Work-Net과 복지부 Welfare-Net간의 연계를 위해 『노동-복지행정시스템』이 구축·운영(2000년10월)되고 있음

○예를 들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취업대상자를 지자체(읍·면·동)에서 분류하여 노동부에 위탁할 때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동 전산망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 역으로 우리 부 소관 취업대상자의 조건 이행 여부, 사업참여에 따른 소득액 등을 동 전산망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여 취업대상자 적격여부 재심사, 생계급여액 산정 등에 반영

※ 우리 부 자활사업 참여상황 등 조건 이행 상태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되고 사업참여에 따른 소득액 발생현황 등은 매월 1회 통보

○다만, 초기상담과정에서 지자체가 파악한 개별 취업대상자 가정여건, 심리적 상태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전산망을 통한 정보공유가 어렵고 일부 전산입력된 정보가 지연 처리되는 경우 등이 있는 바,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시행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질 의)

9.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의 문제점에 대해 지금까지 취한 개선대책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99년7월 부실 훈련이 최소화되도록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을 개정하였음

〈주요내용〉

- ① 관인 출석부 도입

- ② 허위 출결 훈련생에 대한 제재제도 도입 (허위 출석시 6개월 이내 훈련 참여 배제)
- ③ 훈련기관이 훈련생에 대해 훈련과정, 훈련시 주의사항 등을 사전 설명토록 의무화(2시간 이내)
- ④ 위탁배제 훈련기관의 정부지원훈련 참여배제 조항 신설
- ⑤ 훈련기관 수시점검 근거 마련

○또한 2000년도에 기숙사비를 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표준훈련비 단가를 조정하여 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음

○이러한 제도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훈련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 금명간 추가적인 고용촉진훈련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훈련 효율화 방안 주요내용〉

- ① 우선선정직종훈련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우선선정직종수당 인상
- ② 인력수요가 적은 서비스·사무관리 직종에 대한 과도한 위탁방지를 위해 위탁 상한비율 설정
- ③ 무단 퇴소한 중도탈락자에 대한 훈련배제기간 연장(3개월→1년)
- ④ 훈련동기가 불분명한 훈련희망자에 대한 직업심리검사 실시
- ⑤ 지자체 훈련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과정 개설

(朴赫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1. 청사 신축관련 예산이월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음

(답 변)

○우리 부 청사신축 관련 예산이 이월된 것은 99년 이후 총 5개소임

※ 청사신축 관련 이월예산 : 99년 3,818백만 원, 2000년 5,304백만 원

○예산이월이 발생된 것은 주로 공사착공연도에 설계착수지연 등에 의하여 연말에 공사가 시작되어 실 공사기간이 짧은데 기인하고

- 일부(2개소)는 매입에서 신축으로, 단독청사에서 합동청사로 사업계획이 중도에 변경되어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것임

※ 사업변경으로 예산이월 : 2개소 3,922백만 원 (2000년)

○ 앞으로 건물설계, 시공업체 선정 등 사전준비와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 공사기간 중에 사업변경이 발생되어 공사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동청사 건립여부 등을 청사수급계획 수립시부터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음

※ 예산편성 금액도 가급적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 반영

<청사신축 관련 예산이월 내역>

(단위 : 백만 원)

기관별	공사기간	예산이월 내역			이월사유
		계	99년	2000년	
계		9,122	3,818	5,304	
관악	98.12~99.12	2	2	-	감리비(계약기간이월)
수원	99.5~2000.5	313	313	-	동절기 공사중단
인천 북부	99.11~2001.2	1,133	455	678	연말착공 및 동절기
울산	99.10~2001.1	2,174	1,470	704	연말착공 및 동절기
청주	99.11~2001.11	3,106	1,578	1,528	사업변경(단독→합동)
천안	2000.12~2001.11	2,394	-	2,394	사업변경(매입→신축)

(질 의)

2. 기능대학의 이전 또는 확대사업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결과,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 향후 기능대학 설립시는 건립 타당성, 부지선정 문제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 운영 중인 기능대학이 22개소이고, 설립 중인 기능대학이 2개소(아산정보, 강경)이기 때문에
  - 기능대학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기능대학이 유능한 중간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능대학의 시설·장비 보강 등 교육훈련환경 개선에 주력하겠음

(질 의)

3. 직업훈련카드제 구축방식이 분산형에서 집중형으로 변경된 이유를 물으셨음

(답 변)

- 직업훈련카드제를 도입할 당시(98)에는 인터넷기술의 미발달 등 정보통신기술의 한계로 분산형시스템으로 계획하였으나
  - 2000년 이후 인터넷을 활용한 통합시스템의 운영가능성이 확인되어 운영시스템을 집중형으로 변경하게 된 것임

(질 의)

4. 카드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를 물으셨음

(답 변)

- 98년 직업훈련카드제를 시범도입한 결과 카드판독에 시간이 걸리는 등 시스템상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 시범운영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대부분 개선하였음
- 따라서 분산시스템에서 집중시스템으로 변경한 것은 시스템의 불안정 때문이 아니라
  -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임
- 동 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지게 되어 예산절감이 가능하였고, 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예산절감우수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음

(질 의)

5. 2000년 예산편성시 카드시스템의 운영방식을 충분히 예상하여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를 물으셨음

(답 변)

- 위원님도 잘 아시듯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속도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인터넷기술의 발전은 특히 그러함
- 2000년 예산편성당시(99)까지는 집중형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중앙서버 구축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중앙서버가 필요없는 분산형시스템으로 계획하였으나
  - 초고속통신망 등 인터넷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터넷을 활용한 집중형 카드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임  
 ○위와 같이 계획변경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6. 직업훈련카드시스템 구성방식변경을 위해 관서운영비를 시스템 장비도입비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용역비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물으셨음

(답 변)  
 ○직업훈련카드시스템이 분산형에서 집중형으로 개선됨에 따라 관련 시스템구입 및 프로그램개발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 일부 예산을 자산취득비 및 연구용역비로 전용하게 된 것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7. 직업훈련카드제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98년, 99년 예산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지를 물으셨음

(답 변)  
 ○98년에는 직업훈련카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99년 예산(3억)으로는 대전과 천안지역에 시범실시를 하였음  
 ○시범실시과정에서 MS(Magnetic)카드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등 직업훈련카드제의 운영에 관한 많은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음  
 ○따라서 99년 투입예산은 금년에 추진하는 집중식카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됨

(질 의)  
 8. 부족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고의로 불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산하기관의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액을 예산편성과정에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음

(답 변)  
 ○우선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고의로 사업추진을 기피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겠음  
 ○산하기관의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액을 예산편성과정에서 배정하는 문제는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다만, 이러한 경우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에게

기본적인 호봉상승분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인상해 주지 못하는 곤란한 점도 있음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행 예산 편성과정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 또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이 최소화 되도록 산하기관의 자체수입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 일반회계예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질 의)  
 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수입감소·지출증가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기금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음

(답 변)  
기금운용 현황  
 ○기금 적립금은 90년 설치 이후 매년 누적 증가하다가 99년 2,590억 원을 정점으로 축소되기 시작  
 - 별도 대책이 없는 한 2003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되고 향후에는 당해연도 수입만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예측됨  
적립금 축소원인  
 ○99년까지 적립금 증가는 장애인고용실적이 낮아 수입에 비해 지출이 적었기 때문임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함으로써 장애인고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장애인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 97년 복지부·교육부와 공동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98~2002년)』에 의거 직업전문학교 등 투자사업 확대  
     ※ 적립금을 2002년까지 7억 원만 남기고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수립  
 - 여기에 99년 장애인기준 완화 및 2000년 장려금단가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개정에 따라 추가지출요인 발생

<장애인고용 증가에 따른 부담금·장려금 변동추이>

연 도	97년	98년	99년
고용인원	10,334명	→ 10,625명	→ 17,840명 →
부담금	777억	797억	737억
장려금	39억	53억	67억

  

	2000년	2001년
	18,710명	→
	629억	671억
	149억	425억

□안정화 방안

<당면대책>

- 장애인기준의 재정비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장애인을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 고용부담금 인상(현행 최저임금의 65% →최저임금의 80%수준)
  -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조정(현행 최저임금기준 →고용부담 기초액 기준)
- <중·장기대책>
- 의무고용률의 달성도에 따라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 고용의무사업주의 단계적 확대
    - 현행 300인 → 2002년 200인, 2003년 100인 이상 고용사업주
  -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 연대책임 차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

(질 의)

10. 산재보험기금의 경우 2000년도 말 현재 미수납액이 5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시면서 기금재정안정화 대책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 2000년도 산재보험료 수납액은 1조 9,555억 원으로 징수 결정액 2조 5,047억 원의 78.1%로 다소 저조한 실정
  - 이는 주로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빈번한 생성·소멸, 적용확대 초기단계에 따른 사업주의 인지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 2001년7월 현재 징수율 : 전년동기 대비 3.2%p 증가(72.5%→75.7%)
-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 자진가입 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보험료 납부, EDI 시스템 조기 도입을 통하여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등 보험료 납부편의를 도모하겠음
- 한편 현행 재정운용방식은 매년 다음 보험연도의 지출을 예측한 후 이에 맞춰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사회여건의 변화와 보험수요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요 및 조달재원에 대한 중장기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적정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겠음

(申溪輪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1. 세입추계 능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음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동부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14억93백만 원인데
    - 세입정수결정액이 175억95백만 원으로 1,078%나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세입추계가 크게 잘못된 것은 사실임
  - 세입정수결정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 98~99년 지자체 고용촉진훈련비 보조금(114억), 대학교에 지원한 청소년 인턴 보조금(27억), 근로자복지매장 보조금(13억), 일하는여성의집 보조금(65백만 원) 회수금 등 당초 예기치 못한 수입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통상적으로 세입예산 추계시 국고보조금 반납금이나 과태료 등이 다음연도에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그 정확한 규모를 미리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 2000년도까지는 매년 세입예산 평균증가율을 140% 수준으로 추정하여 세입규모를 추계하여 왔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2001년부터는 세입예산액을 2000년도 14억93백만 원의 3배 수준인 47억55백만 원으로 대폭 증액 예상하는 한편,
    -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지자체 고용촉진훈련 지원규모를 금년 294억 원에서 내년 220억 원으로 축소 편성하고
    -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자자체로 하여금 훈련전 직업상담을 강화하여 적격훈련생을 선발·관리함으로써 중도탈락을 방지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
- <고용촉진훈련 보조금 예산 추이>
- |      |       |       |       |
|------|-------|-------|-------|
| 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444억 | 367억  | 294억  | 220억  |
- 앞으로 보조금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입예산 규모를 보다 정확히 추계하여 실제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입추계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질 의)

2.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 이를 확대할 의향 등 사업활성화 대책을 물으셨음

(답 변)

- 영유아보육법령에 의거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 2001년6월 말 현재 의무설치 사업장 236개소 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46개소(19.5%)에 불과
- 영유아보육법령상 의무설치조항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고,
  - 보육시설이 여성전용시설로 오인, 대기업의 기혼여성 고용 기피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 보육대상아동이 있는 기혼여성 다수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
- 따라서, 직장보육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보육시설 설치 대상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의무조항→권고조항),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시설설치비 용자지원사업의 이자율(현행 3~3.5%)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중인 공공직장보육시설에 설치하여 설치에서 운영까지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추진중이며
  - 유치원 부지에 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택·조합주택 등 공동주택에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

(질 의)

3.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생활편의시설 위주로 운용되는데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음

(답 변)

-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건립주체인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는 바
  - 체육시설,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 외 노동상담, 취업알선, 취미·교양교실 등의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 수탁운영자의 전문성 부족, 운영재원 확보의 한계 등으로 적극적인 복지사업 추진은 미흡한

실정임

- 우리 부는 종합복지관의 복지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복지관 운영주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관리효율성을 도모한 바 있으며
  - 관리운영자 Workshop 개최,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으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음

(질 의)

4. 한국산업인력공단 퇴직금충당금 문제 발생이유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음

(답 변)

-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의 일환으로 퇴직금 지급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퇴직금충당금 문제가 발생

<중간정산 현황>

(백만 원)

중간정산 (2000년7월1일자)			중간정산 이후 현황 (2000년12월31일자)		
소요액	확보액	정산액	소요액	적립액	부족액
74,229 (1,310명)	26,775	23,931 (707명)	59,985	9,261	△50,724

※ 중간정산은 희망자에 한하여 해당액의 50% 범위내에서 실시

- 앞으로 실행예산 편성과과정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이 최소화 되도록 산하기관의 자체수입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 일반회계 예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질 의)

5. 지자체 고용촉진훈련 보조금 집행잔액과 회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음

(답 변)

- 보조금 집행잔액 회수내역(2001년9월8일 현재)  
(단위 : 백만 원)

년도별	집행잔액	2000년 회수액	2001년 회수액	회수잔액
1999	4,238	1,149	2,750	339
2000	5,114	-	295	4,819



○99년도 회수잔액 339백만 원은 지자체 추경이 편성되면 금년중 전액회수할 예정

○2000년도 회수잔액 4,819백만 원은

- 2001년도에 2,819백만 원 회수

- 2002년도에 2,000백만 원을 회수할 예정임

(吳世勳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1. 2001년도 ①고용유지지원금, ②재고용장려금, ③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④육아휴직장려금, ⑤장기실업자고용장려금, ⑥수강장려금, ⑦직업훈련시설장비대부금의 금년 7월 및 작년 7월 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셨음

(답 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지원금 지급 실적

(단위 : 명, 백만 원)

구 분		2000년7월		2001년7월	
		수혜 인원	지원 금액	수혜 인원	지원 금액
고용유지지원금		99,476	18,467	151,986	30,965
재고용장려금		516	986	244	469
여성 고용 촉진 장려금	육아휴직	962	600	1,648	1,232
	여성 재고용	91	150	122	144
	여성가장 실업자	519	451	458	435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475	199	1,500	726
수강장려금		52	18	13,198	1,187
직업훈련시설 장비대부금		-	5,832	-	4,349

□직업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현황

(단위 : 백만 원)

년 도	대부기관명	대부기관 형 태	대부금액	대부내용	비 고
계		14개기관	10,181		
2000년7월	소 계	10개기관	5,832		
	(재)김해직업훈련원	법 인	700	건물구입	
	수산업협동조합	사업주단체	320	건물신축	
	(주)녹십자	사업주	1,000	건물신축	대기업
	(재)현대산업직교	법 인	218	건물구입	
	상무자동차학원	시설지정	776	건물신축	
	(재)한국직교	법 인	500	건물신축	
	(재)한국전기직교	법 인	88	장비구입	
	(재)동양직교	법 인	1,000	건물구입	
	(재)영진개발원	법 인	500	건물신축	
	(재)한훈전산직교	법 인	730	건물구입	
2001년7월	소 계	4개기관	4,349		
	(재)상무직교	법 인	1,000	건물신축	
	(재)영남직교	법 인	949	건물구입	
	(재)세종직교	법 인	1,400	건물구입	
	(재)한국기술개발직교	법 인	1,000	건물구입	

(질 의)

2. 98~2000년 고용촉진훈련기관 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였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시·도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위반사항	처분내역	위반사항	처분내역	위반사항	처분내역
계	464건	464건	720건	720건	549건	549건
서울	출결관리소홀 등 32건	훈련비감액 등 32건	출결관리소홀 등 30건	시정명령 등 30건	출석부조작 등 62건	1년위탁배제 등 62건
부산	-	-	출석관리소홀 등 2건	훈련비감액 등 2건	출석미체크 등 5건	훈련비감액 등 5건
대구	중도탈락지연보고 등 22건	시정명령 등 22건	출석부조작 등 23건	위탁배제 등 23건	출결사항미체크 등 39건	훈련비감액 등 39건
인천	출석관리소홀 등 5건	시정명령 등 5건	수료증미발급 등 89건	경고 등 89건	재해보험미가입 등 20건	경고 등 20건
광주	재해보험지연가입 등 19건	경고 및 훈련비감액 등 19건	출석부조작 등 54건	영구위탁배제 등 54건	출석부조작 등 32건	1년위탁배제 등 32건
대전	서류미비치 등 29건	시정명령 등 29건	출결관리소홀 등 35건	위탁배제 등 35건	출결관리소홀 등 19건	훈련비감액 등 19건
울산	출결관리소홀 등 94건	경고 등 94건	출석부조작 등 71건	1년위탁배제 등 71건	훈련계획미수립 등 27건	1년위탁배제 등 27건
경기	출석부조작 등 44건	1년위탁배제 등 44건	훈련생관리부실 등 82건	경고 등 82건	출결관리소홀 등 48건	훈련비감액 등 48건
강원	훈련시간미준수 등 30	시정조치 등 30	재해보험미가입 등 28건	시정조치 등 28건	출석미체크 등 28건	시정명령 등 28건
충북	서류미비치 등 24건	시정명령 등 24건	출석부조작 등 42건	1년위탁배제 등 42건	출석부조작 등 21건	1년위탁배제 등 21건
충남	출석부조작 등 44건	1월훈련비감액 등 44건	출결관리소홀 등 91건	위탁배제 등 91건	출석부조작 등 85건	위탁배제 등 85건
전북	출결관리소홀 등 2건	경고 등 2건	훈련비부당청구 등 44건	1년위탁배제 등 44건	출석부조작 등 44건	1년위탁배제 등 44건
전남	출결관리소홀 등 2건	경고 등 35건	훈련수당부당청구 등 33건	위탁배제 등 33건	출결관리조작 등 40건	1년위탁배제 등 40건
경북	출석부조작 등 23건	경고 등 23건	훈련일지미작성 등 30건	경고 등 30건	허위출석처리 등 29건	1년자격정지 등 29건
경남	출결관리소홀 등 56건	경고 등 56건	출석조작 등 57건	1년위탁배제 등 57건	출석조작 등 49건	1년위탁배제 등 49건
제주	서류미비치 등 5건	시정명령 등 5건	출석조작 등 9건	1년위탁배제 등 9건	서류미비치 1건	시정명령 1건

(질 의)  
3. 2000년도 서울·경기지역 고용촉진훈련 수료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 변)

○추후 제출

(질 의)  
4. 고용유지지원금·재고용장려금·육아휴직장려금·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장기실업자고용촉진지원금 수령자의 세부현황 및 직업훈련카드 소지자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 변)

**【붙임】**

외국의 고용보험 적용현황(일본)

(단위 : 천개소, 천 명)

구 분	고용보험 가입대상(A)				고용보험 적용(B)				고용보험 적용비율(B/A)			
	사업체수		근로자수		사업체수		근로자수		사업체수		근로자수	
	전 체	1~4인	전 체	1~4인	전 체	1~4인	전 체	1~4인	전 체	1~4인	전 체	1~4인
1976년	2,669	1,638	39,641	7,985	1,069	455	23,385	914	40.1	27.8	59.0	11.4
1978년	3,015	1,882	42,295	8,650	1,203	557	23,930	1,087	39.9	29.6	56.6	12.6
1981년	3,275	2,044	45,720	9,390	1,385	691	25,596	1,297	42.3	33.8	56.0	13.8
1986년	3,507	2,116	48,995	9,486	1,522	797	27,807	1,505	43.4	37.7	56.8	15.9
1991년	4,144	2,566	54,792	9,184	1,805	985	32,254	1,855	43.6	38.4	58.9	20.2
1996년	4,346	2,548	57,347	8,845	1,959	1,110	33,771	2,010	45.1	43.6	58.9	22.7

※ 한국의 적용현황(2001년7월 현재)

(단위 : 천개소, 천 명)

구 분	계		5인 미만		5인 이상	
	적용대상	실 적	적용대상	실 적	적용대상	실 적
사업장수	1,208	718(59.4)	827	480(58.0)	381	238(62.4)
근로자수	9,269	6,874(74.2)	2,132	1,055(49.5)	7,137	5,819(81.5)

○추후 제출

**(李浩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1. 외국의 고용보험 적용현황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연도별 현황(일본)

- 현재 1996년까지의 적용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바, 97년 이후의 적용현황에 대하여는 주 일본 대사관의 노무관을 통하여 파악 중이므로 확인 즉시 제출 예정입니다.

※ 붙임 : 외국의 고용보험적용 현황(일본)

(全在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1.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및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답 변)  
○우리 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수립중인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에 현행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견개진과 함께  
-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조항을 권고조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사내복지기금 활용을 가능토록 하며,  
    ※ 사내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의 경우 동 시설에 사내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  
- 유치원 부지에 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택·조합주택 등 공동주택에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 근로자의 보육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  
○또한, 사업주의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 『직장보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사업과 더불어,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계획임

(질 의)  
2. 현재 노동부에서 직업상담원과 관련하여 직업안정조직의 전체적인 틀 구축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답 변)  
○현재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2,539명으로 이중 직업상담원이 2,007명, 공무원이 532명으로 직업상담원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의 신분이 일용민간인 신분인 관계로 고용불안과 공무원과의 처우 차이에 따라 사기저하와 업무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우리 부에서는 고용안정조직의 핵심요소인 직업상담원의 신분문제를 가장 절실한 당면 과제로 인식하고,  
- 직업상담원의 상용직화 방안과 고용안정조직의 업무역할 등 직업상담원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 단기적으로는 공무원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로조건 등을 공무원과 같이 조정 개선하는 작업은 진행 중에 있음

(질 의)  
3.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자료, 2001년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 중 직업상담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직업상담원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은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음.  
-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시행중인 직업상담원 규정을 개정하여 경조사 휴가일수의 확대, 직급체계 조정, 승진제도개선, 보수체계 개선(호봉제, 경력인정), 가족수당, 성과상여급제도 신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직업상담원의 신분이 일용 민간인인 관계로 신분불안에 따른 사기저하와 업무의 비효율화가 우려되어 장기근속으로 인한 전문화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그 준비단계로 연구기관에 직업상담원 제도 개선방안을 용역 의뢰 추진 중에 있음

(질 의)  
4. 현재의 직업상담원이 직업상담원 고유의 역할 보다는 고용보험 업무 등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직업상담원은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의 제공, 기타 실직자 등의 취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배치·운영하고 있으며(직업안정법 제4조의4, 고용보험법 제20조, 직업상담원 규정)  
-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는 실업급여, 피보험자관리 기타 고용안정서비스 제공 등 고용보험사업의 수행도 직업상담원 고유의 업무에 포함된다 할 수 있음

○ 즉, 고용보험 사업별로 직업상담원의 역할을 살펴 보면,

- 실업급여는 그 핵심이 '실업인정'으로 실업인정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취업 및 훈련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을 제공하며,
- 직업능력개발사업도 근로자 및 실업자에 대하여 적성에 맞는 훈련상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고용안정사업은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상담원이 각 사업체의 고용조정상황, 인력부족현황 등을 파악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각종 지원금을 활용토록 하는 사업주 상담이 필수적임

○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있는 현상하에서 고용보험과 취업알선·상담 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이라는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 하겠음

- 그러나 현행 직업상담원 운영상 공무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음에도 복무 등에 관하여 적용법규의 차이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휴가·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독일의 경우는 취업상담과 알선을 고용보험의 핵심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사회법전 제3권제3장(제29조~제44조), 연방고용청의 경우 전체 직원 85,840명 중 공무원 20,808명(24%), 민간전문직 53,499명(62%)이 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질 의)  
5. 현재의 직업상담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의향 및 계획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 우리 부는 2001년의 직업상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심화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분야별로 특화하여 실시하고, 단계별 이수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토록 하고 있음

- 또한 직업상담사례집 발간을 통한 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한 민간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금년 중 직업상담원 제도에 대한 연구용

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음

※ 직업상담원의 이직률은 99년 19.2%(공단이직자 포함)를 기점으로 2000년 10.0%, 2001년3월 1.9%로 점차 감소추세

(질 의)  
6. 고용촉진훈련과 자활대상직업훈련과의 차이점과 대상자 선정의 중복가능성에 대하여 물으셨음

(답 변)

○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제외),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음

○ 자활직업훈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훈련대상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질 의)  
7. 고용촉진훈련 보조금 지원 예산책정시 고려대상에 대하여 물으셨음

(답 변)

○ 고용촉진훈련의 차기연도 예산은 시·도별 훈련신청인원, 당해연도 훈련인원, 전년도 예산집행실적, 전년도 취업률, 전년도 자격취득률 등을 반영하여 배정하고 있음

※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 예산 배정 기준

- 2001년도 각 시·도 신청인원 : 50%
- 2000년도 훈련인원 : 20%
- 99년도 예산집행실적 : 15%
- 99년도 취업률 : 10%
- 99년도 자격증 취득률 : 5%

(질 의)  
8. 서울지방청 청사 임차보증금 4억 원을 전용한 것과 관련 행정의 예측력 부재에 대해 질의하셨음

(답 변)

□ 임차보증금 전용 경위

○ 2000년4월17일자 직제개정으로 서울청과 서울중부사무소가 행정대상구역을 상호교체함으로써 청사 건물도 맞교환 하고자 하였으나

※ 종전관할 : 서울청(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서울중부(중구, 종로구)

- 서울청(방배동)의 현원이 서울중부보다 46명(일용포함)이 더 많아 서울청이 서울중부청사(홍인동)로 옮겨갈 경우 258명의 청사 추가면적이 필요함에 따라
- 이에 소요되는 재원 1,639백만 원 중 1,108백만 원은 자체 임차보증금 예산에서 충당하고
- 잔여부족액 531백만 원은 건물주와 협의하여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월 임차료로 지급하여 오던 중

○2000년12월27일 연말불용이 확실시된 중앙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에서 4억여 원을 전용하여 지원하였음

□전용 사유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직제개정 시기는 사전예측이 어렵고 당해연도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해 예산 편성 당시(전년도 5월)에 미리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예산회계법 제36조2항에도 직제개정 관련 추가 소요예산은 이·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청 관할구역의 갑작스런 변경(4월10일 결정, 4월17일 시행)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청사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게 되었고

-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미지급액 상당을 예산확보시까지 월 임차료로 지원하기보다는
- 연말 불용이 확실해진 가능 재원에서 전용하여 충당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질 의)  
9. 중앙근로자복지회관 연구용역비의 과다책정 사유와 동 회관과 중앙근로자복지센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음

(답 변)

□중앙근로자복지회관 연구용역비의 과다책정 사유

○당초 우리 부는 2000년 예산안에 한국노총이 요청한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비 1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하지만, 예산 당정협의(당, 기획예산처)에서 이와 별개로 중앙근로자복지회관 건립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동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

○우리 부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연구용역비로 적정금액인 3천만 원을 집행하고

※ 입찰공고 결과 2,400백만 원~7,900백만 원에 응모

- 나머지는 예산소요가 시급한 근로복지정책 연구과제비(7천만 원)와 서울청 임차보증금(4억 원)으로 사용

□중앙근로자복지센터와의 차이점

○양 시설은 모두 서울에 상징성을 띤 종합 근로자복지시설을 건립한다는 차원에서 유사성을 가짐

○그러나, 연구용역 의뢰한 중앙근로자복지회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가 동 시설을 건립·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경우 근로자 자주복지 차원에서 노총에서 건립·운영하되, 국가에서 이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

※ 금년 6월 노총은 351원을 연차적으로 국고보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우리 부는 2002년 예산으로 89억 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였으나 9월8일 현재 미반영

(崔明憲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1. 부족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고의로 불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당해연도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우선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고의로 사업추진을 기피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나가겠음

○산하기관의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액을 예산편성과정에서 배정하는 문제는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함  
- 다만, 이러한 경우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에게 기본적인 호봉상승분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인상해 주지 못하는 곤란한 점도 있음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행 예산 편성과정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 또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이 최소화 되도록

산하기관의 자체수입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일  
반회계예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음

(질 의)

2. 산업인력공단의 2000년도 취업률이 99년(60.6%)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  
책을 물으셨음

(답 변)

○인력공단 훈련수료자 중 취업대상자수는 16,683명  
으로 수료자의 취업률은 61.2%이며 99년도 60.6%  
보다 0.6% 상승하였음

※ 환노위 검토보고서의 취업대상자 27,063명  
은 16,683명의 오기임

○향후에도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  
음

(단위 : 명)

훈 련 과 정	정 원 (계획)	입학	복· 휴학	중도탈락		훈련실시인원				취업 대상	수료후 취업	취업률 (%)
				인원	%	계	현원	수료	조기 취업			
계	29,920	48,836	21	2,659	-	46,160	45	45,993	122	16,683	10,080	61.2
기능사양성(1년)	7,570	7,832	21	741	9.4	7,074		7,074		4,206	4,072	96.8
여성특별	480	617		11	1.8	606		604	2	606	36	6.3
이동	400	795		6	0.8	789		789				
군전역예정자	400	403		26	6.5	377		377				
원격화상	800	1,265		218	17.2	1,047		1,047				
가상능력개발	8,000	24,091				24,091		24,091				
외국인	300	260				260		260				
고용촉진단기 (주부, 준고령자)	6,000	7,413		1,097	14.8	6,316		6,316		6,316	4,684	74.2
해외취업훈련	1,560	803		63	7.8	740	45	695		695	36	5.2
기능사특별	3,760	4,587		437	9.5	4,150		4,030	120	4,150	1,199	31.8
창업훈련	650	770		60	7.8	710		710		710	53	7.5

※ 취업률=(조기취업+수료 후 취업)/취업대상



(질 의)

3. 산업인력공단 2000년도 해외취업 훈련의 효과(취업률 5.2%)가 99년(취업률 45.9%)보다 낮아진 원인과 해외취업훈련 후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음

(답 변)

○ 해외취업 훈련생 취업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획	실시	수료	중도탈락	취업	취업률
1999	1,800	151	148	3	75	51%
2000	1,560	803	695	63	36	5.2%

※ 2000년도 수료생 695명에는 사우디 보건부의 간호사채용 면접에 대비하기 위한 인터뷰 훈련(15시간 과정)을 받은 182명이 포함되어 있음

○ 해외취업실적 저조 사유

- 해외취업은 국내취업과는 달리 훈련수료 후 취업까지 상당한 기간(3개월~2년)이 소요되므로 2000년도 해외취업훈련생의 취업자수는 36명(취업률 5.2%)으로 낮은 상황
- 그러나 2000년도 훈련생 중 125명이 금년 중 해외취업을 할 예정이므로 이들 숫자를 감안하면 취업률은 27.1%로 낮다고는 할 수 없음

※ 2000년도 훈련생 중 2001년 취업예정 125명의 세부상황 : 19명 출국절차 수속 중, 106명 11월 출국예정(사우디 보건부 취업예정)

- 특히 2000년도 훈련생 695명 중에는 사우디 보건부 채용면접에 대비하기 위해 인터뷰과정훈련(15시간)을 182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훈련수료생에서 제외한다면 사실상 취업률은 36.6%임
- 또한 면접 합격 후 근로계약체결, 취업비자발급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내취업이 되면 해외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여 해외취업훈련생 취업률 제고에는 한계가 있음
- ※ 99년의 경우, 해외취업훈련수료생 148명 중 75명이 간호사 3개월 과정을 수료한 후 어학능력을 시험받지 않고 사우디에 곧바로 취업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

○ 해외취업률 제고 대책

- 해외취업을 전제로 한 맞춤형연수 확대 실시
  - 외국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내용 및 언어를 맞춤형연수에 의거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 고용주가 영어연수를 전제로 채용을 확정된 인력에 대한 연수 실시
- 직업상담사례집 발간을 통한 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한 민간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질 의)

4. 고용의 안정성,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 장애인 고용에 있어 질적인 측면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 2000년12월 현재 국가·지자체는 1.48%, 민간부문은 0.95%(정부투자·출연기관은 1.91%)의 장애인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 90년 법 제정 이래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세이나 의무고용률(2%)에는 여전히 미달하는 등 양적인 측면도 만족할 수준은 아님

○ 그동안에도 정부에서는 장애인고용에 있어 고용안정,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 질적인 측면의 개선을 위해

- 장애인직업전문학교 등을 통해 장애인을 기능인력으로 양성하여 더 높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는 경우에만 고용장려금도 그 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임금이 어느 정도 보장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해 장애인용 시설이나 장비구입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 고용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 수화통역사 등을 고용할 수 있는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향후에는 장애인고용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고용안정,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질 의)

5. 장애인고용촉진사업과 관련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출연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만 원)

-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의무 미이행시 납부하는 사업주 부담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음
  - 정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운영비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90년부터 매년 출연하여 올해 까지 총 135억 원을 출연하였음
-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 정부도 일차적으로 일정부분의 비용을 분담토록 하고
    -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경상운영비와 국가·지자체가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한 정도의 부담금 수준
  -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인 연대부담 차원에서 일반회계에 의한 기금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음

(질 의)  
 6. 노동부가 추진 중인 자활사업 부진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음

(답 변)

- 7월 현재 우리 부는 취업대상자 28천 명을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아 7천 명에 대해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현재까지 목표대비 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임
  - ※ 7월 현재 실적 : 취업알선 3,049명, 자활직업훈련 1,238명, 자활인턴·공공근로 498명, 취업지원계획수립 2,234명 등 7,078명 투입
- 이처럼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업대상자 확보 곤란, 참여자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미흡 등에 기인하고
  - 아울러 취업대상자의 적극적인 자활의지와 근로의욕 미흡도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음
- 자활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자활 프로그램 제공과 제도적 문제점 보완을 추진하고 있음
  - 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및 자활사업 참여 기회자 제재강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하고
  - 직업적응훈련 도입, 자활인턴 관리체계 개선 및 취업알선 이행요건 강화로 조기취업을 유도하고
  - 사업참여대상자 확대(취업대상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와 사업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함(교통비·식비 14만 원, 자활수당 10